

홍보위원회 규정(4-4-5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06.03.)

②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홍보 전략의 수립 및 구체적인 홍보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, 자문한다.

제5조(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홍보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